의안번호	제276호
의결연월일	2006.4.11

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9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4. 4

다. 상 정 일 자: 2006. 4. 10

제130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재무과장: 고영세)

가. 제안이유

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㎡ 미만인 화물자동차(무 쏘 픽업, 코란도 밴 등)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규정하고,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이 불필요함.

나. 주요골자

- o 『자동차관리법』개정으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추가
- ㅇ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명확화
- ㅇ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폐지
- ㅇ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 적용시한 폐지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정낙춘)

- 동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, 자동차관 리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국 가유공자·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의 등록시 감면혜택과 법인 등의 지방이 전에 대한 감면혜택의 지속적 부여 등으로
-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고, 충청남도의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 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 · 답변요지

○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ㅇ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ㅇ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0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ㅇ 없 음